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지원 대상 확대 등 》

■ 운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97호)

2024. 1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운영석의원 대표발의(제2205297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검토의견	4
가.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 추가(안 제19조)	4
나. 골재 품질검사 및 연구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2조의4 등)	8
다.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지원 대상 확대 (안 제34조의4 등)	14
라. 건설공사 발생 토석 골재용으로 반출 의무화 (안 제34조의5)	24

I. 운영석의원 대표발의(제2205297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운영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1. 6.

다. 회 부 일 : 2024. 11. 7.

2. 제안이유

건설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공동체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양질의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기에 골재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 관련 연구에 필요한 국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골재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된 골재를 공급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불비되어 있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화가 필요함.

한편, 공유수면 및 하천에서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 골재채취 허가를 관장하는 법률과 골재채취허가에 따른 수입을 관장하는 법률이 상이하여 수입의 원인에 부합한 적재적소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허가권한을 가진 자의 의지에 반해 정책수단이 결여되어 의지만으로는 양질의 골재수급 안정을 도모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

이에 공유수면 및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함에 따른 수입 중 일부의 집행을 골재채취허가 법률로 이양하여 골재수급 안정과 주변 환경보

전, 민원해소 등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함.

또한, 국내 골재 수급 환경은 과거 하천·바다 등에서 채취하는 천연골재 위주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암석을 선별·파쇄하여 골재를 제조하는 자원의 순환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어 골재생산을 위한 암석 등의 수급이 매우 중요함.

하지만 최근 건설현장의 공사가 감소하고 있고, 발주자 또는 발주청에서는 건설공사 공기 등을 이유로 암석 등을 단순 매립·성토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암석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건설공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암석자원을 선별·파쇄 골재원으로 가급적 활용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연환경 훼손 예방, 국토자원의 보전 및 골재수급의 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현행 규정은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이 있으나, ‘품질검사를 받아 품질기준에 미달된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제1항제8호의3 신설).

나.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의 골재채취허가 시 골재채취에 따른 하천점용료 및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수입 중 일부를 골재채취허가법

를로 이양하여 허가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및 제34조의3, 제34조의4제2항 신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 연구를 위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4 제8항 신설).

라. 골재 공급원의 고갈 및 축소 등에 따라 수급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선별·파쇄 암석자원에 대한 골재용으로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5).

4. 검토의견

가.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 추가(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 ----- ----- ----- ----- ----- -----.
1. ~ 8의2. (생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u><신설></u>	<u>8의3.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u>
9. ~ 13. (생략)	9.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22조의4¹⁾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자나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1) 「골재채취법」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①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골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
-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골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야 하고,

골재채취업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이에 따라 현행법 제19조제1항2)제8호의2에서는 현행법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행법 제22조의4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골재채취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골재채취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7.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제22조를 위반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

8의2.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9. 제28조에 따른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여 공중(公衆)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10.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한 경우

1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경우

12.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경우

13.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이와 같이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품질검사를 받은 이후 그 품질기준에 미달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현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품질기준에 미달한 골재를 공급한 골재채취업자를 적발한 경우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6항3)에 근거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아닌 행정조치(판매중지) 처분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조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 또는 위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3)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9호)

제9조(결과의 처리) ①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골재의 품질시험 결과가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검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골재 품질검사 확인서(이하 "품질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며, 품질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골재의 품질시험 결과가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품질검사의 결과가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검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업장에 용도별로 품질검사를 할 경우에는 용도별 품질검사 결과를 품질확인서에 일괄·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검사에 대한 결과를 매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AGRIS) 누리집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⑤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검사의 부적합 결과 및 기타 조치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가 있을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그 조치내용을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향후 동 행정조치(판매중지) 부과 대상자가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그 효력에 대한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행정조치 대상자와 부과권자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법적 근거가 미약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골재채취업자의 품질기준 미달 골재 공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법률 명확성 원칙 제고 및 법률 유보 원칙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나. 골재 품질검사 및 연구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2조의4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① ~ ⑦ (생략) <u><신설></u>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품질 검사 실시 및 골재 품질향상 연구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품질검사 실시 및 골재 품질향상 연구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22조의4제2항4)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자가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⁵⁾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4) 「골재채취법」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①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골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골재산업연구원을 지정하여 골재 품질검사를 진행 중에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⁶⁾에서는 골재 품질검사의 방법을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⁷⁾하면서 골재채취업자가 받아야 하는 골재 품질 정기검사와 달리,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골재품질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와 관련하여 동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에 관한 현행법상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에는 골재를 공급하려는 골재채취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⁸⁾되어 있는 반면,

6)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7(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골재의 품질검사(이하 "골재품질검사"라 한다)**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검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골재의 사용자가 골재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골재와 관련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골재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골재품질 관련 사고예방 및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7) 국토교통부는 골재 채취여건 악화로 저품질 골재 유통 유인이 증가하여,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도입하여 품질관리 중

* 정기검사('22년부터, 연 1회) :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품질검사(검사 7일전까지 통보)

** 수시검사('23년부터) : 국토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필요시 사전 통보 없이 진행)

8) 「골재채취법」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하려는 자
2. 제1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
3. 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
4.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수시검사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부담 주체간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임.

따라서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품질검사 실시 및 골재 품질향상 연구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시검사 비용과 관련한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수시검사의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실시한 골재품질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 정기검사의 경우 불합격률이 2023년 5.3%, 2024년(6월 기준) 14.8%로 나타났으나,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2023년 25.0%, 2024년(6월 기준) 26.1%로 나타나 골재품질 수시검사의 효과성이 정기검사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이후 실시한 골재품질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표 >

기간	정기검사				수시검사			
	검사업체	합격	불합격	불합격률	검사업체	합격	불합격	불합격률
23.01~ 23.12	753건	713건	40건	<u>5.3%</u>	28건	21건	7건	<u>25.0%</u>
24.01~ 24.06	352건	300건	52건	<u>14.8%</u>	23건	17건	6건	<u>26.1%</u>

※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정기검사는 골재를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골재채취업자가 그 골재의 품질을 담보하여 골재채취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인 반면,

수시검사는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사용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임의적으로 골재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감안해 볼 때,

수시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 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수시검사의 목적에 부합해 보이고, 불량 골재로 인한 부실공사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수시검사의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국토교통부도 2023년 골재 품질검사 운영 결과 약 80개 업체에 대한 수시검사 필요성이 있었으나, 재정상의 문제로 28개 업체에 대해서만 품질검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⁹⁾과,

9) <국토교통부 수시검사 비용추계 내용>

- (수시검사 지원) ‘23년 품질검사 운영 결과, 약 80개 업체에 대한 수시검사 필요성*이 있었으나, 재정 한계로 28개 업체 실시
- * 품질검사 불합격 업체 수 + 레미콘 제조사, 건설사, 지자체 등이 제보한 업체 수
- 향후 제보된 업체 및 정기검사 불합격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 차원으로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의 10%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
- ☞ 수시검사 지원 예산으로 매년 약 1억원* 소요 예상
- * ‘23년 골재생산 실적 업체(761개) × 수시검사 비율(10%) × 1회 검사비용(130만원)

KS인증을 받은 골재품질 검사¹⁰⁾의 경우에도 정기검사 비용은 업체가, 수시검사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제보된 업체 및 정기검사 불합격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에서는 골재 품질향상 연구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일부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인천 검단 LH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¹¹⁾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목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10) 골재품질 수시검사는 「산업표준화법」 제20조에 따라 KS인증을 받은 골재(한국표준협회 등이 실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하고 있는 '시판품질조사'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시판품질조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국가기술표준원이 부담하고 있음.

「산업표준화법」

제20조(시판품질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11) ○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2022. 1. 11.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되어 근로자 7명 사상(사망 6명, 부상 1명)

* 39층(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

⇒ 주요원인: 사고조사위원회는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콘크리트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

○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2023. 4. 29. 인천 검단신도시 내 LH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상판(슬래브)이 붕괴되는 사고 발생(인명 피해 無)

⇒ 주요원인: 사고조사위원회는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

골재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골재품질 연구기술 지원¹²⁾의 수월성 및 지속성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12) ○ 토분* 제거 공정기술 개발 및 혼합골재** 자원화 등

* 미세한 흙 입자로 물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토분이 다량 포함된 골재가 콘크리트 제조용으로 사용될 경우, 콘크리트 단위수량이 증가하여 콘크리트 강도가 저하

** 골재의 혼합은 사용자인 레미콘 업체에서 임의로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음

다.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지원 대상 확대 (안 제34조의4 등)

현행	개정안
제34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 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자로부터 골재채취단의 조사·환경보전 또는 행정절차 이행 등 단지관리업무에 드는 비용(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생략) 1. ~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주변 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사용하여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생략) ③ ~ ④ (생략) 제34조의4(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 ----- ----- ----- ----- ----- ----- ----- 다만,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라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가 신청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의4(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① (현행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때부터 적용한다.	
<신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하천법」 제37조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하천점용료 또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 골재채취로 인한 주변지역의 생태계보전 및 복원 등 자연환경 보호사업
<신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주변지역 주민 등의 소득증대, 생활안정, 생활환경 개선, 어업보호 및 복리증진 등 지원사업
<신설>	3. 기타 골재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개정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하천법」 제37조¹³⁾

13)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¹⁴⁾에도 불구하고 하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골재채취단지의 조사·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폐(汚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따르는 흙·돌의 채취 및 준설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7.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제7호부터 제10호까지·제15호·제18호에 따른 물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15.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의 채취

천점용료 또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① 골재채취로 인한 주변지역의 생태계보전 및 복원 등 자연환경 보호 사업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주변지역 주민 등의 소득 증대, 생활안정, 생활환경 개선, 어업보호 및 복리증진 등 지원사업 ③ 기타 골재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먼저, 개정안의 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현행법 제3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지관리비¹⁵⁾는 같은 조 제2항

2.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취

④ 광역시장·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에 대한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청별 특성과 점용료·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⑧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5) 「골재채취법」

제34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 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골재채취 단지의 조사·환경보전 또는 행정절차 이행 등 단지관리업무에 드는 비용(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단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2. 하천점용료 등 또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납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사용하여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골재채취단지의 조사·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③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를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④ 단지관리비의 징수·산정기준 및 분할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따라 ①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제1호), ② 하천점용료 등 또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납부(제2호),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사용하여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제3호), ④ 그 밖에 골재채취단지의 조사·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제4호)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34조의3제2항 각 호중 제3호의 경우 단지관리비를 대통령령¹⁶⁾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6조(단지관리비의 산정) 법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비(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2]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제36조관련)

1.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비용
 -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의견수렴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 나. 삭제 <2016. 6. 30.>
 - 다.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약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비용. 다만, 골재채취단지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에 지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골재의 부존량·부존위치 및 개발가능여부에 대한 조사 비용
2. 하천점용료 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납부비용
 - 가.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료등
 -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사용료
3. 골재채취단지의 관리를 위한 비용
 - 가.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비
 - 나.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 및 관리비

16)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6조의2(단지관리비 사용범위) 법 제34조의3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골재채취단지 인근의 1개 시·군·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의 경우는 3개 이내의 시·군·구를 말한다. 이 경우 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환경보호, 어업보호, 복지증진 및 육영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법 제34조의3제2항 각 호 중 제2호를 제외한 단지관리비 징수액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2의2]

연간 채취물량별 적용기준(제36조의2 관련)

연간 채취물량	적용요율
700만㎥ 이하	5%
700만㎥ 초과 800만㎥ 이하	10%

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사용하여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중 극히 일부만이라도 제34조의3 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단지관리비는 현행법 제3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에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됨.

단지관리비를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법 제34조의3제2항제3호의 입법 취지는 주로 하천 또는 바다에 지정되는 골재채취단지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골재채취단지로 인한 환경파괴, 주민 생태계 위협 등 관련 피해가 다수

연간 채취물량	적용요율
800만㎥ 초과 900만㎥ 이하	15%
900만㎥ 초과 1,000만㎥ 이하	20%
1,000만㎥ 초과 1,100만㎥ 이하	25%
1,100만㎥ 초과 1,200만㎥ 이하	30%
1,200만㎥ 초과 1,300만㎥ 이하	35%
1,300만㎥ 초과	40%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단지관리비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주변지역 환경, 주민 및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 체계에서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동 점용료 등을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에 극히 일부만을 집행하더라도,

단지관리비를 관리하고 있는 단지관리자¹⁷⁾는 단지관리비를 현행법 제34조의3제2항제3호 단서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골재채취단지 주변의 주민 또는 어민의 민원이 해양수산부가 아닌 골재채취업자에게로 집중되는 비합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가 각각 소관으로 하고 있는 「하천법」 제37조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하천점용료 또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집행 권한의 일부를 「골재채취법」으로 이관하고,

17) 「골재채취법」

제34조의2(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① 골재채취단지는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는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제외한다)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하천점용료 또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의무적으로 골재채취로 인한 주변지역의 생태계보전 및 복원 등 자연환경 보호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주변지역 주민 등의 소득증대, 생활안정, 생활환경 개선, 어업보호 및 복리증진 등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골재채취법」을 소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및 골재채취업자와 관련 주민 또는 어민과의 원활한 관계 증진과 각종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어 보임.

그런데, 현재 골재채취 시 납부되고 있는 점용료 및 사용료 등은 해당 법령에 따라 국가(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계상되어 수산자원조성사업, 수산발전기금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골재채취지원만을 위해 점용료 및 사용료의 2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비용의 사용 목적 및 규모 등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해수부·환경부)와의 협의 및 의견 수렴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사용료 산정 및 사용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연 안	(산정) : 바다골재 도매가격의 30% 징수 (사용) : 사용자 납부 → 지자체 수입 →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 (수입의 50% 이상)
EEZ	(산정) : ('18년) 채취원가 20%, 약 2,000원/m ³ → ('20년) 도매가격의 30%, 약 6,400원/m ³ (사용) : 사용자 납부 → 국가 수입 (수입의 50%) → 수산발전기금 → 수협중앙회 사용자 납부 → 인근 광역시·도 수입 (수입의 50%) → 인근 3개 이내 시·군·구 균등 교부 →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개정안에서는 하천점용료 또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골재채취로 인한 주변지역의 생태계보전 및 복원 등 자연환경 보호 사업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34조의4에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34조의4는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과정에서의 감면 또는 절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하천점용료 등의 사용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개정안의 내용과는 관련성이 부족해 보이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 제34조의4보다는 별도의 조를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해 보임.

아울러, 안 제34조의4제2항 중 「하천법」 제37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와는 달리 별도의 하천점용료를 별도의 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현행법 제34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만을 언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안 제34조의4제2항 중 ‘「하천법」 제37조 및 하천점용료’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재 골재채취 시 납부되고 있는 점용료 및 사용료 등은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계상되어 수산자원조성사업, 수산발전기금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 등 그 사업 대상이 포괄적인 관계로 피해 어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점용료·사용료의 수입 일부(20%)에 대한 집행을 「골재채취법」으로 이양하여 골재채취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어민들에게 활용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라. 건설공사 발생 토석 골재용으로 반출 의무화 (안 제34조의5)

현행	개정안
제34조의5(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4조의5(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①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 발주자 및 발주청이 -----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 골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1.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킬로미터 이내에 순성토를 할 수 있는 토석이 없는 경우
<신 설>	2. 암석을 사토하는 것이 순성토 하는 것보다 해당 공사의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경우
<신 설>	3. 암석을 사토하는 것이 순성토 하는 것보다 국토환경을 훼손하게 하는 경우
<신 설>	4. 사토하는 암석을 다른 사업에 활용하여야 하는 경우
<신 설>	5. 사토하는 암석이 골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생략)	6.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처리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골재용 암석을 사토할 때에는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검토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¹⁸⁾에 따른 발주자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¹⁹⁾에 따른 발주청으로 하여금 그 발주자 및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①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킬로미터 이내에 순성토(純盛土)²⁰⁾를 할 수 있는 토석이 없는 경우, ② 암석을 사토(捨土)²¹⁾하는 것이 순성토 하는 것보다 해당 공사의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골재용으로 활용·처리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부존 자원의 고갈, 인근 주민의 민원 급증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공사의 기초 자재인 골재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건설 원자재값이 급등하고, 이로 인해 레미콘 및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²²⁾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공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암석자원을 선별·파쇄 골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하여 불필요한 자연환경 훼손 예방, 국토

1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9)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20) 순성토: 흙양이 부족해서 외부로부터 반입해오는 성토를 말함.

21) 사토: 흙양이 남아서 외부로 반출하는 토량을 말함.

22) '골재수급 부족' 건설공사 차질 우려' (남도일보, 2024년 7월 21일)

'지역 레미콘업체 "건설 현장 모래 수급 부족' (광주매일신문, 2024. 07.21)

자원의 보전 및 골재수급의 안정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우리나라의 골재채취 환경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산지가 많은 관계로 주로 바다, 하천, 산에서 채취되는 천연골재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환경 규제 강화 및 인근 주민의 민원 급증 등으로 천연 자원 채취 여건이 날로 어려워져 골재 수급량 확보가 쉽지 않아 보임.

이와 같이 골재 공급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불법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증가하고, 재생모래, 마사토, 미세척된 바다모래 등과 같은 저품질의 골재가 대량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부실 건설공사의 중요 원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임.

더욱이, 최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상승 및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건설 원자재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골재까지 원활하게 수급되지 못하면서,

골재 가격이 수도권 부순골재(암석 파쇄골재) 기준으로 2020년 7월 m³당 14,700원에서 2024년 7월 m³당 18,300원으로 24.5% 급증하였고, 모든 건설공사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레미콘²³⁾ 가격의 경우에도 2020년 7월 m³당 66,300원에서 2024년 7월 m³당 93,700원으로 41.3%

23) 레미콘 원가구성(추정) : 시멘트 30%, 골재 20%, 운송·유류비 20%, 인건비 등 기타 30%(자료: 국토교통부)

급등한 바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골재채취원을 다양화하려는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보임.

< 최근 5년간 골재 및 레미콘 가격 변동 추이 >

구 분	2020년 7월	2021년 7월	2022년 7월	2023년 7월	2024년 7월
수도권 부순골재(원/m ³)	14,700	15,700	16,300	19,300	18,300
수도권 레미콘(원/m ³)	66,300	67,700	80,300	88,700	93,700

※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개정안에서는 토석을 반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①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킬로미터 이내에 순성토를 할 수 있는 토석이 없는 경우, ② 암석을 사토하는 것이 순성토 하는 것보다 해당 공사의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경우 ③ 암석을 사토하는 것이 순성토 하는 것보다 국토환경을 훼손하게 하는 경우 ④ 사토하는 암석을 다른 사업에 활용하여야 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토석을 반출하지 않는 조건을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근거, 사토하는 것이 순성토하는 것보다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예산 규모의 기준, 사토하는 것이 순성토하는 것보다 국토환경을 훼손한다는 기준, 사토하는 암석을 다른 사업에 활용하여야 할 때 다른 사업의 내용 등이 모두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

해 볼 때, 개정안에 따른 토석을 반출하지 않는 조건을 관련 업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하위 법령에 구체화하는 것이 향후 토석 반출과 관련한 법적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권한과 관련 부산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해당 공사를 발주한 소유주 및 도급한 건설사업자에게 있는데, 이를 골재채취원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개정안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 업계와의 사전 협의 및 법적 타당성 여부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환경 규제 등 천연골재 채취여건 악화로 양질의 골재 수급을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발생암을 골재원으로 활용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자원을 반출하도록 의무화하면, 공사기간 지연 등의 우려가 있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자원의 소유주와 발주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암석자원의 처리에 있어 분쟁을 유발할 수 있어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암반출 의무화를 개정안과 같이 민간 발주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적용될 수 있고, 실효성이 저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규모 공공공사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기준 등을 마련하여 매각 활성화를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591